종합감사

2015년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감사결과 보고

2015. 11.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감 사 실

Ⅰ 감사개요

1. 감사 목적

○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비축물자 보관 및 판매, 자금 융자 및 사후관리, 임산물 등 해외시장개척 사업 추진 등 주요 사업수행 실태 및 조직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적정성 점검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감사범위** : 2013. 5월 ~ 2015. 9월까지의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5. 10. 19 ~ 10. 23(5일)
○ **감사인원** : 3명

4. 감사중점사항

○ 경영관리 전반 및 예산집행·회계처리의 적정성
○ 정책자금 융자·관리의 적정성
○ 계약 및 시설관리의 적정성
○ 비축농산물 보관, 판매업무 추진실태
○ 임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추진 및 정산실태
○ 수출 및 사이버거래소 지원업무 추진실태
○ 기타 정기감사 지적사항 조치이행 사항 점검 등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일련번호	수감부서	건 명	처분요구	처리할부서	조치결과 회보여부
1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미등기건물 양도담보 취득 부적정	시 정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회보요
2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NR등급(무등급) 업체 융자심사제도 개선 필요	개 선	재무관리처	회보요
3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국산메밀 수매사업 정산 불철저	현지조치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회보불요
			주 의	경영지원처	회보요
4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임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비 정산 부적정	시 정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회보요
			주 의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회보불요
				경영지원처	회보요
5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사옥 임대유치 노력 및 임대수지 개선을 통한 수익 제고	통 보 (모범사례)	경영지원처	회보불요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 첨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요구

시 정

제 목 미등기건물 양도담보 취득 부적정

수 감 부 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처리할 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내 용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는 '◎◎◎◎영농조합법인'에 [표 1]과 같이 우수농식품 구매지원자금을 융자하면서 부동산담보를 취득하였다.

[표 1] '◎◎◎◎영농조합법인' 부동산담보 및 융자현황

(단위 : 천원)

업 체 명	부동산 담보내역		융자내역	
	담보종류	감정가액	자금명	융자액
◎◎◎◎(영)	창고, 기계기구	1,312,201	우수농식품구매자금	790,000

「자금융자규정」 제26조(부동산담보의 종류)에 따르면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은 대지, 건물 및 공장의 물적시설과 기타 사장이 담보가치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으로 하며, 담보물의 이용 상 필요한 부대물건 또는 권리는 첨 담보로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자금융자업무지침」 제4장(담보) 제1절(부동산담보)에서는 미등기건물 및 감정평가서상 제시 외 건물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담보취득이 불가한 기계기구는 양도담보로 반드시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감정서 습용기간 5년이 경과한 부동산담보는 재 감정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감정서 습용기간이 경과한 부동산의 신규 감정평가서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직전 감정평가서와 비교하여 부동산 목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된 부동산 목록에 대해서는 담보취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미 등기 건물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양도담보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경매 등 법적조치 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도담보로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는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目目시 소재 창고 건물이 부동산의 감정평가 습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2013. 7. 2. 재 감정을 실시한 결과 [표 2]과 같이 단층 차양이 추가되거나 기존 미등기 건물의 구조 변경 및 면적증가로 총 3건의 미등기 부동산 목록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담보를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표 2] 재 감정평가 실시로 인한 미등기 건물 변동내역

업 체 명	미등기 건물 변동 내역	비 고
◎◎◎◎(영) (3건)	㉥ 경량철골조 판넬 및 천막지붕 단층 작업장 (12 × 40) + (5 × 20) ≒ 580㎡ ㉦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재활용쓰레기장 5 × 5 ≒ 25㎡ ㉲ 철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 차양 4 × 4 ≒ 16㎡	㉥ ㉦ : 구조 변경 및 면적 증가 ㉲ : 추가 물건

조치할 사항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영농조합법인의 추가되거나 변경된 미등기건물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요구

개 선

제 목 **NR등급(무등급) 업체 융자심사제도 개선 필요**

수 감 부 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처리할 부서 재무관리처

내 용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는 융자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대출제한 여부, 부분신용 대출한도 산정, 부동산 담보비율 적용 등 융자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금융자업무지침」 제3장(신용평가 및 융자심사)에서는 지역본부는 자금지원 업체에 대한 '한국기업데이터(주)'(이하 'KED'라 한다.)의 신용등급 결과를 반영하여 공사 신용등급(AR 신용등급)을 부여토록 정하고 있는데, "신용평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등급취소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무등급이나 KED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NR등급(무등급)으로 정의하고 있고 NR등급에 해당하는 업체는 신규 및 추가대출을 금지하고 대환대출 및 기한연장의 경우에는 전액 신용대출과 부분신용대출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자금융자업무지침」 제5장(신용대출 및 연대보증) 및 제4장(부동산 담보)에서는 대환 취급기준으로 신용평가제도의 변경에 따라 대환 시 감액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14.10.30. 개정 직전의「자금융자업무지침」을 기준으로 AR신용등급을 적용하여 감액여부, 감액비율 등을 결정하여 대환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 지침 적용은 2017. 2.28.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는 [표 1]과 같이 부분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한 '△△△'는 KED평가 CCC+에 해당하여 추가적으로 AR신용평가 실시하여 AR6w로 평가됨에 따라 부분신용보증서 대출취급기준에 따라 기존 대출액의 10%를 상환한 후 대환을 취급한 반면, 부동산담보를 제공한 NR등급인 '▲▲▲'와 '▼▼▼영농조합법인'은「자금융자업무지침」제3장(신용평가 및 융자심사)에 따라 "부동산 등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기존 대출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당해 연도 AR신용등급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전년도 대출취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정책담보비율 10%를 인정하고 있어 신용평가결과를 반영한 융자심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1] 융자심사 사례

업체명	신용등급		대출 취급		비 고
	KED등급	AR등급	담보	적 용	
중도매인35번 (△△△)	CCC+	AR6w	부분신용 (90%)	대출액 10% 감액 대환	
중도매인82번 (▲▲▲)	NR	-	부동산	전년 대출기준 적용 (정책담보비율 10%)	신용평가 거부
▼▼▼영농조합법인	NR	-	부동산	〃	평가서류 미제출

조치할 사항 **재무관리처장**은 신용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NR등급(무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제도 변경 전의 AR신용평가를 실시하여 정책담보비율 인정 등 융자심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
현지조치, 주 의

제 목 **메밀 계약재배 및 생산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수 감 부 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처리할 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경영지원처

내 용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는 메밀의 생산기반 조성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메밀 계약재배 및 생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식량관리처(구. 곡물사업처)에서 2014.07.28.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 시달한「2014년도 메밀 계약재배 및 생산지원사업 추진계획」상의「메밀 계약재배 및 수매협약서」에 따르면 계약재배 대상 조직(농가)에 1ha당 376천 원의 생산장려금 또는 80kg의 메밀을 현물로 지원하되, 수확 후 수매협약물량을 aT지역본부에 인도하지 않을 경우 지원된 생산비 등을 전액 aT지역본부에 환불해야 하며, 인도한 물량이 수매협약량 대비 상당히 부족할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생산비 등 일부를 환수토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는 계약재배 협약을 체결하고 생산지원비 또는 현물 종자를 지원한 이후 재배조직이 수매협약 물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생산지원비 등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는 2014. 8. 20. ◇◇시 농업기술센터와 계약재배 협약을 체결하고 재배면적 9ha에 파종할 현물종자 720kg(생산지원비 3,384천 원 상당)을 지원하였는데, 이후 ◇◇시 농업 기술센터가 폭설로 인한 도복 등을 이유로 수확을 포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사유를 확인하여 생산지원비 등 환수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감사기간 중 동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완료하였다.

조치할 사항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앞으로 메밀 계약재배 및 생산지원 사업 추진시 계약재배 및 수매협약에 따라 수매협약 물량 부족시 생산지원비 환수 조치 등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현지조치),**

경영지원처장은 메밀 계약재배 및 생산지원사업 관련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
시 정, 주 의

제 목 **임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정산 부적정**

수 감 부 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처리할 부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경영지원처

내 용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권한위임 및 전결규정」에 따라 2014. 7. 14. 임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을 지사 위임전결사항으로 위임받아 임산물의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사업운영 및 결과보고, 정산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4년에는 사업비 1,581백만 원을 정산하였으며 2015년에는 2,056백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선도조직육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014년도 임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선도조직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평가결과에 따라 기반조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선도조직으로 선정된 ■■■의 2013년도 평가결과(우수)를 반영하여 125백만 원까지 기반조성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표 1] 임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기반조성 인센티브 지급기준

(단위 : 백만 원)

평가결과	최우수	우 수	일 반	미 흡
	80점 이상	80~70점	70~60점	50점 미만
지원액	150	125	100	-

「2015년도 임산물 수출선도조직 기반조성 인센티브 정산안내[1]」에 따르면 기반조성 인센티브는 사업종료 후 지원한도액 및 지원범위 내에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고, 정산시 모든 비용지급 영수증은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단 간이영수증은 불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의 「2014년도 임산물 수출선도조직 기반조성 인센티브 정산결과」를 보면 ▣▣▣이 '조직화 및 운영관리'항목으로 단합대회 지원비(식비) 600천 원을 정산요청한 것에 대하여 단합대회 추진결과 및 사진 등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식대항목을 수기로 작성한 간이영수증만 가지고 정산처리를 하였다.

이에 감사기간 중 관련사진 및 실제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현지에서 보완·확인하는 등 현지조치 하였다.

<해외홍보판촉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015년도 임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에 임산물 수출업체의 수출확대 및 시장개척을 위하여 해외홍보판촉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80%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 한도 내에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계획 정산요령에 따르면 사업비 정산 시 모든 사업비용은 해당 판촉행사와 직접 관련하여 증빙서류 원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고, 특히 임차비에 대해서는 실질 발생비용에 대하여 유통업체 발행 증명서 또는 임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1)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2926(2014.12.2.)

그런데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가 처리한 「2015년도 1분기 임산물 해외판촉 정산결과[2]」를 보면 ▣▣▣이 일본에서 해외 판촉홍보를 실시함에 있어 '임차비' 항목으로 17,33,064원(￥1,879,800)을 정산 요청한 것에 대하여, 제출된 증빙서류가 유통업체 날인이 있는 영수증에 수기로 일자, 금액, 내역이 명기된 간이영수증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체 발행 증명서 또는 관련 임차계약서 등 추가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정산처리 하였다.

이에 감사기간 중 대행사 확인서 및 유통매장 발행 실제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현지에서 보완·확인하는 등 현지조치 하였다.

<수출상품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014년도 임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에 따라 임산물 수출유망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3단계에 따른 수출상품화 지원 사업을 추진·정산(사업비의 70%)하고 있으며, 다만 수출업체 관할지역이 타 지역본부인 경우에는 관할지역본부에서 직접 처리한 후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사업추진 및 정산결과에 대하여 보고받아 전체 사업정산을 담당하고 있다.

동 사업계획 정산요령에 따르면 사업비 정산 시 지출내역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원본확인) 첨부 시 인정하는데, 이때 모든 대가지급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첨부하거나 지출결의서(전표) 또는 송금증(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단 간이영수증은 불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경기지역본부가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로 제출한「2014년도 임산물 수출상품화사업 정산결과 보고[3]」를 보면 ◆◆◆◆가 '현지시장조사 및 수출상담'

2)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1305(2015. 5.29.)
3)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3966(2014.12. 9.)

항목으로 수출업체 현지 시장조사 및 바이어 초청 관련 총 4차례의 출장비 24,058,134원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정산서류로 수기로 작성된 인보이스 및 간이영수증만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 2]와 같이 사업비로 전액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지원 약정한도 28,000천 원 중 수출목표 달성도 99.8%를 적용하여 27,944천 원[4]을 정산·지원하였다.

[표 2] ◆◆◆◆ 수출상품화 지원사업 '현지시장조사 및 수출상담' 항목 정산내역

(단위 : 원)

차수 (출장 일자)	지출항목	청구 금액	인정 집행 금액	정산 금액	지원 기준
1차 (2014. 3.30)	항공료	2,289,176	2,289,176	1,602,423	정산기준에 따라 항공료는 집행비 70% 지원, 숙박비는 1회당 1,000천원 한도 지원
	숙박 등 체재비	2,343,000	2,343,000	1,000,000	
2차 (2014. 8.15)	항공료	2,870,906	2,870,906	2,009,634	
	숙박 등 체재비	2,210,000	2,210,000	1,000,000	
3차 (2014. 8.21)	항공료	2,180,052	2,180,052	1,526,036	
	숙박 등 체재비	1,800,000	1,800,000	1,000,000	
4차 (2014. 9. 8)	항공료	4,485,000	4,485,000	3,139,500	
	숙박 등 체재비	5,880,000	5,880,000	2,000,000	
지 출 합 계		**24,058,134**	**24,058,134**	**13,277,593**	**청구금액 전액 집행비로 인정**

감사기간 중 간이영수증으로 인정된 사업비 24,058,134원의 지출증빙 자료를 ◆◆◆◆에 요구하였으나, 2014. 9. 8. 바이어 초청 항목으로 집행된 항공료(4,485,000원)에 대하여 대한항공으로 지출된 카드 이용내역서를 제외하고는 여행사 측에 현금 직접 지급, 기존 채무관계 상계 등의 이유로 추가 지출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현지시장조사 및 수출상담' 항목으로 인정된 사업비 24,058,134원 중 최종 사업비 지출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19,573,134원을 제외하고 인정 집행금액을 재 산정하면, [표 3]과 같이 총 인정 집행금액 37,138,623원에 대한 지원비율 70%를 적용하여 25,941,005으로 지원금액이 수정되며 이에 기존 정산금액 27,944,000 원 중 차액분인 2,002,995원에 대해서 환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4) 지원한도 = 지원 약정한도(28,000천원) * 수출목표 달성도(99.8%)

[표 3] ◆◆◆◆ 수출상품화 지원사업 기존 및 수정 정산결과

(단위 : 원)

정산내역	정산결과				검토 결과
	인정 집행금액(A)	지원금액(A*70%)	지원한도	정산 금액	
기존 정산결과(A)	56,711,757	36,079,098	27,944,000	27,944,000	간이영수증 인정
감사 후 수정 정산결과(B)	37,138,623	25,941,005	27,944,000	25,941,005	실제 지출증빙 없는 집행비 19,573,134원 불인정
차 액(A-B)	19,573,134	10,138,093	-	2,002,995	환수금액

조치할 사항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2014년도 수출상품화사업 지원사업자 ◆◆◆◆에 대하여 증빙서류 미제출로 실제 지출여부가 확인되지 못하여 재 산정된 정산금액에 의거하여 기 지원된 금액 중 2,002,990원(원단위 절사)을 환수하시고**(시정)**, 향후 임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별/항목별 정산기준에 부합하는 증빙서류를 충분히 검토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정산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영지원처장은 ㈜◆◆◆◆에 대한 2014년 임산물 수출상품화사업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 보(모범사례)

제 목 사옥 임대유치 노력 및 임대수지 개선을 통한 수익 제고

수 감 부 서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처리할 부서 경영지원처

내 용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는 5층 건물의 사옥을 보유·관리함에 있어 '15년 10월 현재 8개 업체가 입주중이며, 임대 및 지역본부 사무실 사용을 제외하고 약 21.8%의 공실이 발생하고 있다.

[표 1]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사옥 운영현황

구 분	전 체	임 대	공 사	공 실
시설규모	1,059평	573.8평	254평	231평
점 유 율	100%	54.2%	24%	21.8%
비 고	1-5층	1-4층	5층	

최근 대전지역 임대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공실발생이 늘고 있어 운영수익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전의 각 구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사옥의 지리적 장점 및 주차 공간 등을 피력하여 홍보하였고, '15년 3차례 지역 언론사를 통한 임대광고 실시하거나 옥외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임대유치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은행금리 인하로 인한 보증금 수익률 저조가 예상되자 납입보증금 50% 초과하는 업체 3개를 대상으로 [표 2]와 같이 납입보증금을 최대 50%까지 인하 조정하는데 합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대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표 2]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사옥 임대보증금 조정 현황

구분	업 체 명	계약만기	협의시기	협의사항 (보증금율 조정)	비 고
기존	◐◐◐◐◐◐ 법률사무소	'15.04.10	'15.3월	80% → 50%	* '15.4.11부터 적용
기존	◑◑◑◑◑◑ 제품협회	'15.04.24	'15.3월	80% → 50%	* '16.4.24부터 적용 -문서로 접수
기존	◇◇◇◇◇ 손해보험	'15.09.04	'15.3월	79% → 50%	* '15.7.15 중도해지
신규	□ □ □	'16.10.01	'15.9월	15%	신규 입주업체

그 결과 '15년 10월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예상되는 공공기관(□□□ 연구소)을 임대하는데 성공하였고, 보증금 인하조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함으로써 [표 3]과 같이 연간 약 14,428천 원의 임대수익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표 3] 임대보증금을 조정 전·후 임대료 수익 현황

(단위 : 원)

구 분	월 임대료 (조정업체 중심)			비 고
	조정 전(a)	조정 후(b)	증가액(a-b)	
기존업체(2)	213,060 345,250	532,650 630,960	319,590 285,710	
신규입주(1)	182,950	780,000	597,050	
합 계	**741,260**	**1,943,640**	**1,202,350**	연간 14,428천원

이와 같이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의 사옥 임대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과 적극적인 업체 유치 및 임대수지 개선 노력을 통해 지역본부 수익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치할 사항 **경영지원처장**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사례)**